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앱 설치하기

※

단지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7.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4.07.19(금)	24.07.29(월)	24.07.30(화)	24.07.31(수)	24.08.01(목)	24.08.07(수)	24.08.10(토) ~ 24.08.14(수)	24.08.19(월)~ 24.08.21(수)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2024년 6월 7일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시공하여 준공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 본 주택은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사이버건본주택(<https://www.raemian.co.kr>)으로만 운영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현황 확인을 위한 개별적인 아파트 방문은 불가합니다.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검수가 완료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대상자에 한해 당첨 동·호수 관람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관람행사 기간 외 개별적인 아파트 방문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마이너스 옵션 실시 대상이 아니며, 당첨 동·호수 관람행사를 통해 기 시공된 기본제공품목 및 옵션품목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전매제한에 대해 「주택법」 제64조제4항, 제5항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동법 제57조의2제5항, 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의거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한 사항에 대한 부기등기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수 없으며, 입주 시 잔금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기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의 부동산 시책(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등) 및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101동 201호와 104동 204호는 단지 부대시설 상층[101동 201호: 어린이집 상층/ 104동 204호: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상층] 구성되어 어린이집과 시니어스클럽(경로당) 파라펫 골조 높이로 인해 세대에서의 시야간섭, 채광 및 조망 등의 생활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실시공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101동 어린이집 옥상, 104동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옥상은 단지 내 공용 공간으로 개인적 전유 공간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실시공 현황 외 조정시설 등 추가 공사항목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축공정률이 100% 완료되어 준공 인가된 아파트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aemia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2.07.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동·호수 관람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4.07.29(월)	24.07.30(화)	24.07.31(수)	24.08.01(목)	24.08.07(수)	24.08.10(토) ~ 24.08.14(수)	24.08.17(토) ~ 24.08.18(일)	24.08.19(월) ~ 24.08.21(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7, 래미안갤러리)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예외1)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기간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의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12500 (2024. 07.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6개동 / 총 641세대[조합 304세대, 보류지 8세대, 임대 37세대] 중 일반분양 292세대
 [특별공급 114세대(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3세대, 신혼부부 41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지정기간: 2024년 8월 22일 ~ 2024년 10월 20일(60일간)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355	01	059.7832A	59A	59.7832	19.9788	79.7620	71.7159	151.4779	26.8584	5	-	-	-	-	-	-	5	3
	02	059.8000B	59B	59.8000	19.9841	79.7841	71.7360	151.5201	26.8658	30	3	3	5	1	2	14	16	1
	03	059.7940C	59C	59.7940	20.0282	79.8222	71.7289	151.5511	26.8787	2	-	-	-	-	-	-	2	-
	04	084.7280A	84A	84.7280	25.9296	110.6576	101.6397	212.2973	37.2619	106	10	10	19	3	9	51	55	3
	05	084.8077B	84B	84.8077	27.4171	112.2248	101.7354	213.9602	37.7897	55	5	5	9	2	4	25	30	2
	06	084.7259C	84C	84.7259	26.4402	111.1661	101.6372	212.8033	37.4332	27	2	2	4	1	2	11	16	1
	07	084.7442D	84D	84.7442	26.2532	110.9974	101.6591	212.6565	37.3764	27	2	2	4	1	2	11	16	1
	08	107.6378A	107A	107.6378	32.8791	140.5169	129.1224	269.6393	47.3165	5	-	-	-	-	-	-	5	2
	09	107.8965B	107B	107.8965	33.2789	141.1754	129.4327	270.6081	47.5382	16	-	1	-	1	-	2	14	1
	10	137.6504A	137A	137.6504	41.1059	178.7563	165.1255	343.8818	60.1929	8	-	-	-	-	-	-	8	1
	11	137.9925B	137B	137.9925	41.0493	179.0418	165.5359	344.5777	60.2891	3	-	-	-	-	-	-	3	-
	12	155.8754	155	155.8754	44.6254	200.5008	186.9883	387.4891	67.5150	4	-	-	-	-	-	-	4	2
	13	191.8590	191	191.8590	53.4951	245.3541	230.1543	475.5084	82.6185	4	-	-	-	-	-	-	4	2
합 계										292	22	23	41	9	19	114	178	19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및 실시공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 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B	84A	84B	84C	84D	107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2	1	-	1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1	-	1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2	-	-	-	4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	-	-	-	2
		경기도	-	1	-	-	-	-	1
		인천광역시	-	1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	1	1	-	-	3	
해외건설 근로자	1	1	-	1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2	5	3	1	1	1	13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50%)	1	5	2	1	1	-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5	19	9	4	4	-	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3	2	1	1	1	9	
생애최초 특별공급		2	9	4	2	2	-	19	
합계		14	51	25	11	11	2	11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표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세대수	동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59A	5	101동 3호 103동 1,2호	2~3층	3	1,339,300,000	350,400,000	1,689,700,000	337,940,000	1,351,760,000
			5층	1	1,346,000,000	352,200,000	1,698,200,000	339,640,000	1,358,560,000
			6층	1	1,353,300,000	354,100,000	1,707,400,000	341,480,000	1,365,920,000
59B	30	103동 3,4호	2층	1	1,306,100,000	341,800,000	1,647,900,000	329,580,000	1,318,320,000
			6~15층	6	1,319,300,000	345,200,000	1,664,500,000	332,900,000	1,331,600,000
			16~25층	20	1,352,200,000	353,800,000	1,706,000,000	341,200,000	1,364,800,000
			26~27층	3	1,384,000,000	362,100,000	1,746,100,000	349,220,000	1,396,880,000
59C	2	103동 5호	6~7층	2	1,353,800,000	354,200,000	1,708,000,000	341,600,000	1,366,400,000
84A	106	102동 3,4호 104동 1,2호	2~3층	5	1,718,100,000	449,600,000	2,167,700,000	433,540,000	1,734,160,000
			4~5층	8	1,741,500,000	455,700,000	2,197,200,000	439,440,000	1,757,760,000
			6~15층	40	1,795,300,000	469,800,000	2,265,100,000	453,020,000	1,812,080,000
			16~25층	39	1,826,000,000	477,800,000	2,303,800,000	460,760,000	1,843,040,000
			26~30층	14	1,849,200,000	483,900,000	2,333,100,000	466,620,000	1,866,480,000
84B	55	101동 2호 104동 3호	2~3층	4	1,684,100,000	440,600,000	2,124,700,000	424,940,000	1,699,760,000
			4~5층	4	1,706,900,000	446,600,000	2,153,500,000	430,700,000	1,722,800,000
			6~15층	20	1,759,700,000	460,400,000	2,220,100,000	444,020,000	1,776,080,000
			16~25층	20	1,789,800,000	468,300,000	2,258,100,000	451,620,000	1,806,480,000
			26~29층	7	1,812,500,000	474,200,000	2,286,700,000	457,340,000	1,829,360,000
84C	27	102동 2호	2~3층	2	1,668,100,000	436,400,000	2,104,500,000	420,900,000	1,683,600,000
			4~5층	2	1,690,700,000	442,400,000	2,133,100,000	426,620,000	1,706,480,000
			6~15층	10	1,743,000,000	456,100,000	2,199,100,000	439,820,000	1,759,280,000
			16~25층	10	1,772,800,000	463,900,000	2,236,700,000	447,340,000	1,789,360,000
			26~28층	3	1,795,300,000	469,800,000	2,265,100,000	453,020,000	1,812,080,000
84D	27	102동 1호	2~3층	2	1,665,500,000	435,800,000	2,101,300,000	420,260,000	1,681,040,000

			4~5층	2	1,688,200,000	441,700,000	2,129,900,000	425,980,000	1,703,920,000
			6~15층	10	1,740,300,000	455,400,000	2,195,700,000	439,140,000	1,756,560,000
			16~25층	10	1,770,100,000	463,200,000	2,233,300,000	446,660,000	1,786,640,000
			26~28층	3	1,792,600,000	469,000,000	2,261,600,000	452,320,000	1,809,280,000
107A	5	101동 1호 104동 4호	2층	2	2,104,100,000	550,500,000	2,654,600,000	530,920,000	2,123,680,000
			3층	2	2,220,900,000	581,100,000	2,802,000,000	560,400,000	2,241,600,000
			4층	1	2,267,700,000	593,300,000	2,861,000,000	572,200,000	2,288,800,000
107B	16	106동 2호	2~3층	2	2,175,600,000	569,200,000	2,744,800,000	548,960,000	2,195,840,000
			4~5층	2	2,221,400,000	581,200,000	2,802,600,000	560,520,000	2,242,080,000
			6~15층	10	2,290,100,000	599,200,000	2,889,300,000	577,860,000	2,311,440,000
			16~17층	2	2,358,700,000	617,200,000	2,975,900,000	595,180,000	2,380,720,000
137A	8	105동 2호	2층	1	2,769,800,000	724,700,000	3,494,500,000	698,900,000	2,795,600,000
			4층	1	2,828,000,000	740,000,000	3,568,000,000	713,600,000	2,854,400,000
			6~14층	5	2,915,500,000	762,900,000	3,678,400,000	735,680,000	2,942,720,000
			16층	1	3,003,000,000	785,700,000	3,788,700,000	757,740,000	3,030,960,000
137B	3	105동 2호	5층	1	2,832,600,000	741,100,000	3,573,700,000	714,740,000	2,858,960,000
			7,9층	2	2,920,100,000	764,100,000	3,684,200,000	736,840,000	2,947,360,000
155	4	106동 1,3호	2~4층	4	3,364,458,000	880,315,000	4,244,773,000	848,954,600	3,395,818,400
191	4	105동 1,3호	2~3층	4	4,121,500,000	1,078,400,000	5,199,900,000	1,039,980,000	4,159,92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137A, B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로 137A는 짝수층에, 137B는 홀수층에 배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 해외건설 근로자(기관추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해외건설 근로자(기관추천)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2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근로자: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7.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해당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19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p> <p>- 세대주일 것</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p>-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p> <p>*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p>

	<p>*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p> <p>*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1인 가구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p>						

비고	<p>■ 자녀기준</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p>■ 소득기준</p> <p>- 소득 확인 시점</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7.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60 798 2141 1082">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①지역 → ②추첨 <p>■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p>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2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함 <p>■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p>
-----------	--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 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또는 영주증을 말함)</p>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공고단지 청약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2024.08.07(수) ~ 2024.08.16(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2024.08.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08.10(토) ~ 2024.08.14(수)	래미안 갤러리 1층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공통 유의사항**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4.08.10(토) ~ 2024.08.14(수)]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각 유형별 당첨자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관추천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① ②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	본인	· 건분주택 비치 ※ 배점점산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건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인증서류(아래 자산인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가점검산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을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분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인증서류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통산하여 5개년도 납부 인증서류(아래 생애최초 소득세 납부인증 구비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입양의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인 직계비속이 미혼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준: 본인발급/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건분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소득증빙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로 발급)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사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사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세대	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②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결정통지서 ③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	①, ③ 해당직장 ②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의 재무제표	①, ③ 해당직장 ②, ③ 세무서/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②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④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서 ②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의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소득세 납부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동일)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 부 입증서 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와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원인 경우)	①, ④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산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발급방법: 정부24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주민등록주소) > 과세목록조회 > 발급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정부24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irs.gol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정부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방법: 이택스(서울)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④ 정부24 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정부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④ 정부24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 중 소득기준(생애최초 160%, 신혼부부 맞벌이 160%, 외벌이 14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예외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일반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①②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 청약자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가점검산용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 ·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p>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정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 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IX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4.08.19(월) ~ 24.08.21(수)	래미안 갤러리 1층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좌이체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아파트 공급계약: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①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②10억원 초과: 35만원 ※ 발코니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①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②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③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각각의 공급대금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은 계약자가 100% 납입(전자수입인지 확인) 후 1/2 세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환불할 예정	
	○		통장사본		· 수입인지 세액 환급용(계약자 명의 환불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통 제출 (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발코니확장 및 옵션 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통 제출 (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발코니확장 및 옵션 계약 체결용)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	인감도장	대리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상기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각 세대별 공급금액의 20%이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80%를 납부해야 하고, 잔금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해야 합니다.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일부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계약금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 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p>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p> <p>※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p>	<p>-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p>※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p> <p>-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기타 계약체결조건</p>	<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p>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발코니확장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204-011903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은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중도금대출을 시행할 수 없으며, 입주 시 잔금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기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의 부동산 시책(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59.7832A	059.8000B	059.740C	084.7280A	084.8077B	084.7259C	084.7442D	107.6378A	107.8965B	137.6504A	137.9925B	155.8754	191.8590
공급금액	14,374,800	13,785,200	15,738,800	18,397,500	17,106,100	15,796,000	15,796,000	21,805,300	21,128,800	18,146,700	18,146,700	25,724,600	30,067,400

※ 발코니 확장 공간에서 안방 앞 및 일부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제조사: 삼성전자)	
		무풍형 + WIFI	공기청정형 + WIFI
059.7832A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7,400,000	8,900,000
059.8000B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7,400,000	8,900,000
059.7940C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7,400,000	8,900,000
084.7280A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개소]	9,200,000	11,000,000
084.8077B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8,100,000	9,600,000
084.7259C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8,100,000	9,600,000
084.7442D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8,100,000	9,600,000
107.6378A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주방/식당 [6개소]	10,800,000	13,000,000
107.8965B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주방/식당 [6개소]	10,800,000	13,000,000
137.6504A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주방/식당 [6개소]	10,800,000	13,000,000
137.9925B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주방/식당 [6개소]	10,800,000	13,000,000
155.875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주방/식당 [7개소]	13,600,000	16,100,000
191.8590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주방/식당 [7개소]	14,500,000	17,1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형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전 타입 드레스룸 공간은 설치개소에서 제외되며, 주택형 155.8754 및 191.8590 타입의 보조주방은 에어컨 설치장소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구분	내용
<p>발코니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2024년 6월 7일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시공하여 준공인가가 완료되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및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등이 상이할 수 있음 ·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3중유리 단창으로 설치되며, 창호 설치는 실시공 현황을 파악하고 계약 바람 · 동일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상하/좌우 인접 세대의 유무 여부 및 조건이 상이하여 공간의 폭, 천장고, 전기/설비 사항 등에 대해 실시공 현황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확장구간은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은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형에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실 등) 외부창호는 단창 또는 그릴 등으로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해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개별 확장 시공에 따른 하자는 원인소재에 따라 A/S접수가 불가함 · 디자인을 위한 입면변화가 적용되어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의 형태, 개소 및 각 실의 확장면적이 다를 수 있음 · 전용면적 상 동일 타입이라도 세부 타입에 따라 구조 안정성, 단열 성능 등을 위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어, 각 실의 확장 면적 또는 확장 되지 않은 발코니의 면적(크기)이 다를 수 있음
<p>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① 무풍형 + WIFI ② 공기청정형 + WIFI 중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형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냉매배관이 전실 기본 제공됨(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의 가동을 위한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배관 연결구 및 전기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p>[천장형 냉매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A, 59B, 59C, 84B, 84C, 84D: 거실+침실1+침실2+침실3(4개소) - 84A: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5개소) - 107, 137: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주방(6개소) - 155, 191: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주방(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 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어플리케이션 제어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옵션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할 시 별도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연결할 경우 A/S가 불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제시된 선택품목에 한하여 계약체결 예정임.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행사 이전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 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금 일정 및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금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금(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납부일정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미입금 시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 시행자 및 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및 당첨자 관람행사 안내

- 입주지정기간: 2024년 8월 22일 ~ 2024년 10월 20일(60일간)
- 세대 관람행사 안내:
 - 당첨자 발표 후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대상 세대에 한하여 당첨세대 관람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 21 조 제 3 항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방문행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입주지정기간에는 단지 내 개설되는 입주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당 세대를 임시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실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함)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36, 37, 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주민운동시설(옥외),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등 [계약전 실시공 현황 참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3.0m (1개소)	2.3m [지하1층 3.0m, 지하2층 2.9m(선큰하부 제외)]	2.1m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69g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542,101,239,595	62,176,305,564	23,969,233,862	2,787,031,599	1,052,878,604	7,803,688,478	44,052,414,575	683,942,792,277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
택지 가산비	합계	118,842,579,190	
	토목공사비용	13,605,536,98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도로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	43,046,956,91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 및 이설비용	4,648,106,25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753,016,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20,548,321,60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비용	36,240,641,42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 가산비	합계	44,052,414,575	
	구조형식 가산비용	4,580,432,37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2,102,909,57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8,256,644,56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가산비용	13,294,306,04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 설비에 따른 가산비용	13,693,879,89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 수수료	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가비용	1,301,461,7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층충고 상향 공사비용	287,356,49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주택건설과 관련되는 법령 및 조례 등의 재개정에 따른 비용	535,423,90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정기관	감정금액	산술평균
감정평가 금액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421,563,365,370	423,258,660,405
	(주)효산감정평가법인	424,953,955,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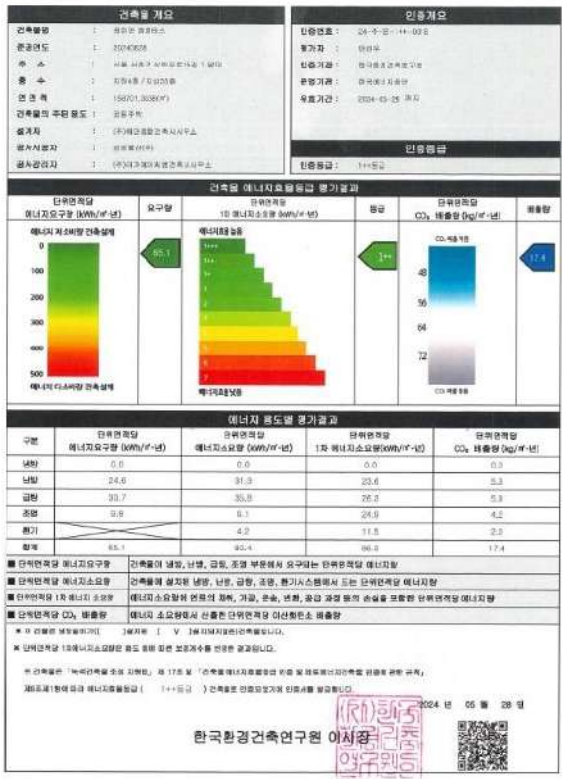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정보통신
회사명	(주)이가에이씨엔건축사사무소	(주)광명토탈엔지니어링	(주)한백에프앤씨
감리금액	4,156,714,100	672,430,490	500,060,000

■ 본 주택은 건축공정률이 100% 완료되어 준공인가된 아파트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17.12.20</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시경</p>	<p>녹색건축 인증서</p>  <p>2024년 06월 04일</p> <p>한국부동산원장</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 신발도15가사립도 주택개발사업 2. 건 명 차: 신발도15중가가주택개발사업(신발도15)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4. 신청 등급: 1등급</p> <p>다. 인증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인증등급</th> <th>인증등급</th> </tr> <tr> <td>건축물 에너지효율</td> <td>1등급</td> <td>1등급</td> </tr> <tr> <td>녹색건축</td> <td>1등급</td> <td>1등급</td> </tr> <tr> <td>공동주택성능</td> <td>1등급</td> <td>1등급</td> </tr> </table> <p>2023년 02월 02일</p> <p>한국부동산원장</p>	구분	인증등급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1등급	녹색건축	1등급	1등급	공동주택성능	1등급	1등급
구분	인증등급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1등급												
녹색건축	1등급	1등급												
공동주택성능	1등급	1등급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시공자)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10171-0074861)	삼성물산㈜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5762)

XII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은 2024.6.7일 준공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함 • 계약 체결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를 비치하오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람 • 관리비 부과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예정임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실시공 현황,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준공도서 등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임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나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재건축 소형주택은 택지 구분없이 계획 되었으며 단지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재건축 소형주택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24 개정)에 따라 신규 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 12 조 제 3 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행여부 및 운영여부를 결정 예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25 년 2 월 부터 예정임 • 청약신청 또는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p>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시공이 어려워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등)의 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세대 및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해당세대를 우선으로 함) •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바람
<p>건본주택 /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전시품, 가구, 전시조명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세대 옵션 품목은 추가 선택 시에만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에 준함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단위세대 평면도 및 실시공 현황을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을 참고하셔서 평면 형태, 가구 배치, 마감재 등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은 계약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할 수 있음 •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실시공 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제공 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청약 당첨자는 계약전에 반드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실시공 현황과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은 59B, 84A, 107B 타입을 촬영하였음
- 155, 191타입은 마감재가 상이하오니 마감재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 홍보물, 현장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설계 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계약서에 표시된 대지지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평형타입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분양(공급)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구조물(옹벽, 산벽, 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높이, 위치 등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및 지붕공간을 사용하는 세대는 발코니 등의 형태, 창호의 형태, 보안시설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바닥마감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지정타일 마감이 적용됨 • 특정 세대에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될수 있고, 제공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세대의 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재건축 소형주택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별 편차가 있을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현재 지정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운영방식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결정 예정임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에는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음 • 스카이크뮤니티 하부 PIT 층 옥상은 피난용으로 사용불가함 • 102 동 1,2 호 세대 엘리베이터는 비상시 스카이 커뮤니티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정해진 경계범위 외부는 사용할 수 없음 •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 동 어린이집 옥상, 104 동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옥상은 단지내 공용공간으로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음. 어린이집과 시니어스클럽(경로당) 파라펫 골조 높이에 따른 세대에서의 시야 간섭으로 채광, 조망 등의 생활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세대는 계약 전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어린이집,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 라운지 등)을 단지 내 공용창고 혹은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입주 후 5년간 사용 후 인도) • 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평형별로 크기 및 형태, 위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창고 운영방식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결정 예정임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다용도실에 설치되고 일반쓰레기 투입구는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전면에는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어 구청 보호수 관리(방제, 전지 등) 작업이 있고, 보호수에 의한 조망, 채광 등에 대한 생활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현황을 확인 바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동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광장, 드롭오프존 등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 102, 103, 104, 105, 106 동] •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문주, 승강기실, 계단실, 옥상구조물, 옹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 동, 102 동, 103 동, 104 동, 105 동, 106 동] • 다음 동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정화조, 사우나, 수영장, 쓰레기이송설비, 소연회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배기구, 환기구,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옥상연도: 쓰레기 이송설비 및 정화조 기계실 배기(106 동 코어), 사우나 배기(102 동 1,2 호 코어), 소연회실 주방 배기(104 동 3,4 호 코어) / 지상층 배기(DA): 수영장 실내 배기(102 동), 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 실내 배기(106 동)] •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한전인입개폐기, 통신인입맨홀, 지하철 환기구, 정화조/ 음식물쓰레기 지상배출구, 부대시설 실외기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정화조/음식물 쓰레기 지상배출 및 통신인입맨홀(106 동 인근), 9 호선지하철 환기구(102 동 인근), 한전인입 개폐기(103 동 인근)] •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쓰레기 이송설비 시설, 쓰레기 이송설비 중간기계실, 기계실, 소방용수실, 전기실, 발전기실, 연료전지실, 저수조, 정화조, 빗물저류조, 열교환실,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 이송설비 시설(101 동 하부),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중간기계실(각동 하부 및 인근), 전기실(104 동 하부 및 인근), 발전기실(104 동 하부 및 인근, 105 동 인근), 저수조 펌프실, 빗물저류조(106 동 하부 및 인근), 사우나/수영장 열교환실(102 동 하부 및 인근), 정화조(101 동 하부 및 인근), 연료전지실(106 동 하부 및 106 동 주변 지상부 연도 총 6 개 인출), 지열기계실(105 동 하부)]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문주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실시공 현황에 따름 • 다음 동은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으며,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조경공간에 설치 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01 동, 102 동, 103 동, 104 동, 105 동, 106 동 (인근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시니어스클럽(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지붕에는 옥상마감패턴이 계획될 수 있으며, 관리상의 목적에 따른 출입으로 해당동 및 주변(101, 102, 103, 104, 106 동 등)에 소음피해 및 사생활 침해,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실시공 현황에 따름 • 단지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고 추후에 담장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지상의 모든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실시공 현황을 확인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없음 •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 운행 층수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되므로 준공도서의 현황을 확인 바람 • 모든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의 주변에는 실외기 또는 급배기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 침실 등 세대측에 공용계단 및 승강기가 설치되어 공용계단 및 승강기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아별 승강기는 동일 평형, 동일층수라도 대수, 인승, 속도가 다를수 있으니 필요시 확인 바람 101 동 1,2 호 세대 코아 17 인승 속도 150m/min 2 대, 101 동 3,4 호 세대 코아 17 인승 속도 150m/min 2 대, 102 동 1,2 호 세대 코아 17 인승 속도 150m/min 2 대, 102 동 3,4 호 세대 코아 17 인승 속도 150m/min 2 대, 103 동 1,2 호 세대 코아 17 인승 속도 150m/min 2 대, 103 동 3,4,5 호 세대 코아 17 인승 속도 150m/min 2 대, 20 인승 속도 150m/min 1 대 104 동 1,2 호 세대 코아 17 인승속도 150m/min 2 대, 104 동 3,4 호 세대 코아 17 인승속도 150m/min 2 대, 105 동 17 인승 속도 180m/min 2 대, 20 인승 속도 180m/min 1 대, 106 동 17 인승 속도 180m/min 2 대, 20 인승 속도 180m/min 1 대, 102 동 3 호 세대 인근 스카이크뮤니티용 20 인승 속도 180m/min 1 대 102 동 2 호세대 인근 커뮤니티용(사우나/수영장) 15 인승 속도 60m/min 1 대 101 동 1,2 호 세대 코아 승강기는 17 층~29 층까지 승강기 1 대 운행됨 104 동 3,4 호 세대 코아 승강기는 17 층~28 층까지 승강기 1 대 운행됨 • 101 동 1,2 호 라인과 104 동 3,4 호 라인의 주동 승강기는 총 2 대 중 1 대는 지하 4 층~16 층까지 운행, 1 대는 지하 4 층~최상층세대까지 운행으로 계획된 것에 대하여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창호일체형 유리난간 설치로 세대로의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사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101, 103 동은 분양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이 같은 동에 계획됨 •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102 동 필로티와 지하 주민공동시설(지상 1 층~지하 4 층)에 수직동선 승강기가 설치되며 운행에 따른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붕구조물의 형태 및 재질은 실시공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시설물 중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와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음(단,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설치위치: 101 동 옥상 - 태양광 집광판 설치위치: 101 동, 102 동 스카이크뮤니티 지붕층 -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위치: 101 동, 104 동 옥상층 / 지하 2 층- 헬룸(4 개소) • 주동 우편함은 지하 1 층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디자인 및 개소는 실시공 현황을 참고하기 바라며, 우편함 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 현황에 따름 • 공동주택 로비, 필로티,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천장고 등)등은 실시공 현황에 따름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101 동 1,2 호 인근 지하 1,2 층에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이송설비가 기계실이 설치되어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1 동 1,2 호 및 104 동 1,2 호 인근 지하 1 층에 대용량 음식물 투입구가 설치되어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부대시설에서 해당 보관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음 • 지하 2 층 각동 인근에는 쓰레기 이송설비 중간기계실이 설치되어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1 층 각동 인근에는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설치되어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1 층 필로티에는 제연헬름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5 동 옥상에 비상용 소화수조가 설치됨 •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2 개소(105 동 1 호라인 지붕, 106 동 3 호라인 지붕) 계획되어 있음 • 커뮤니티에 카페, 라운지, 피트니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경관조명, 입면변화,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 및 커튼월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조망시 장애,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천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주동 돌출 수직물딩 중 지붕에서 시작한 옥탑부분은 수직 도장으로 마감됨 • 지하 동출입구를 홀과 주차장간에 단차가 발생하여 경사로가 계획되어 있고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수직동선은 선큰 인근의 계단 및 102동 1,2호 세대 인근 필로티 내 지하 연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단지내 녹도의 경우, 단지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개방될 수 있음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피트니스 운동기구, 이동식가구, 집기류 제외)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위치별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시공 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일부 상이하여 실시공 확인 바람 변경시공에 해당하지 않음 • 수영장 수심은 1.3~1.5m로 계획되어 다이빙을 할 수 없으며, 다이빙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타다운 공법 등에 따른 기동 시공 오차 발생으로 주차구획 및 차로폭이 경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계단실과 지하주차장이 접하는 개소 수는 각 세대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은 RC 및 SRC 구조로 적용되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 총 1,350 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SMC 판넬 또는 블록공간 쌓기 등으로 적용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지하 2 층 6 개소(급속 3 대, 완속 3 대), 지하 3 층 6 개소(급속 3 대, 완속 3 대), 이동식 충전기용 콘센트 130 개 설치(지하 3 층), 주차대수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포함됨 • 무인 택배보관함 및 세탁함이 지하 1 층 2 개동 당 1 개소로 설치됨(단지내 총 3 개소), 설치 위치는 실시공 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 세대창고 세대별 보관 케이지가 지하층에 세대당 1 개소 설치되며, 평형별 사이즈가 상이함. 세대창고의 접근성은 동/코아별로 상이하며, 일부동은 주차장을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 지하 주차장은 택배차량, 청소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지하 1 층의 차량동선 유효높이는 300cm 로 계획하였음. 지하 주차장 차량동선 유효높이는 지하 2 층 290cm(선큰하부 구간 230cm), 지하 3,4 층 230cm 로 계획됨 •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운행 속도는 10km/h 이하로 과속에 의한 사고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실외기실 및 주차장 벽체에 배치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 시 소음, 진동, 주차 및 보행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층 3동, 6동 DA 인근 실외기실(커뮤니티) / 6동 벽체 실외기 (관리사무실, 용역원실, 경비실) 1동 벽체 실외기(이송설비 방재실) - 지하2층 4동 인근 실외기실(커뮤니티 주방 냉동고) - 지하4층 2동, 4동 인근 실외기실(방재실, 커뮤니티), 각동 벽체 실외기 장비(지하1층, 지상1층 엘리베이터 홀)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수경시설은 설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법적 범위 내 시공되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으며 위치, 규모 및 개소수는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주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출입구, 문주, 맘스테이션에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주출입구 램프를 내려와 지하1층에 위치함 • 단지 내 문주, 경비실, 각 시설물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은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단위세대 관련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안목치수 산정 시 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 세대내 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의 위치, 크기, 형태 등은 동별,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으로 구성됨 • 외부창호 및 커튼월록의 프레임과 유리 색상은 실시공 현황을 따르며, 일부세대는 빛의 산란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또는 도면 등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가구 손잡이 및 약세서리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동별, 타입별, 세대별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붙박이 가구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인테리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주방가구(하부장,아일랜드장 하부), 현관, 신발장, 샤워부스, 욕조, 도기류(양변기, 세면기 하부)가 설치되는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건식 세면공간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부주의시 물넘침 및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계약 시 실시공 현황을 확인 바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타입별 일부 다르게 시공되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세대침실 및 욕실문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타입임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계약 이후에 출시되는 가전의 대형화에 따른 주방가구 및 발코니에 신규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 및 베인 등은 동별, 타입별, 세대별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입에 따라 주방가구 및 보조주방 가구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이 설치되며, 동·호수에 따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통합 분전반의 경우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관 워크인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벽면에 매립 시공됨 • 단위세대 침실벽체, 욕실벽체 등 내부벽체는 콘크리트 또는 건식으로 시공됨 (다용도실, PD 벽체 포함) • 단위세대간 벽체는 공사용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중 일부 오픈될 수 있으며, 준공 전 골조,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막음 • 세대현관문에 도어체인이 설치되며, 손끼임 방지창치는 설치 대상이 아님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함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코너선반, 약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목창호의 사이즈, 폭 등은 타입, 천장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해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며, 설치 여부, 위치 및 형태, 면적은 같은 평형대,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하므로 제공되는 분양자료, 실시공 현황 등을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 다용도실에 창호가 있는 경우,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시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 • 터닝도어가 있는 세탁실에 수전, 배관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탁기 등 대형 기구류 반입시 유의 바람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선홈통 등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홈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동별, 타입별, 세대별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창호 전면, 필로티, 주동 상부, 축벽, 부대시설 입면 등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되어 구조물에 의한 소음발생, 빗물뿜, 외부조망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침실 1 발코니에 벽체 결로방지 단열재 등 설치로 발코니 내부 치수가 축소됨 • 하향식 피난사다리 뚜껑부위는 타일마감 미적용되며, 최상층 세대 천정 및 최하층 세대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미적용임 • 오픈 발코니의 유무, 평면구조, 배관간섭여부 등에 따라 커튼박스 높이 및 크기는 실별 상이할 수 있음 • 오픈 발코니는 외부 샷시를 설치할 수 없음 • 오픈발코니 바닥에 바닥배수가 오픈발코니의 외벽으로 유출되어 자연 낙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바닥 물청소시 바람에 의해 하부 세대 내부로 유출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상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사용에 유의 바람 • 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고 최하층 세대에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완강기 피난기구를 비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입상배관은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되고,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는 가스입상배관 신축이음 및 승압방지밸브가 설치될 수 있음 • 침실 1 발코니 천정에는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사용시 창호 개폐에 간섭될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타입별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 등은 현장 실시공 내용에 따르고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조 4 항(21.1.12 개정시행)에 의거하여 국기봉 꽃이는 단위세대에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각 동 출입구 전면 1 개소에 한하여 설치됨 • 창호 형식에 따른 특성으로 Tilt only 창호는 개폐 면적이 좁아 환기에 불리할 수 있으며, 고정형 방충망이 설치됨. Tilt & Turn 창호는 개폐시 실내공간 활용에 간섭될 수 있음. 3중유리 단창이 적용되는 창호는 개폐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음 • 137A, 137B 은 거실이 복층형으로 되어있어 상부 창호는 열리지 않은 고정창으로 제공되고 층고가 높아 커튼설치, 전등교체 등 세대관리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개폐범위, 형태가 실시공 내용에 따름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홀 창 중 층당 1 개소는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로 설치되고, 창호가 2 개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창은 고정형 창으로 설치됨 (공용창호일람표 기준 적용). 단, 엘리베이터홀 지상 1 층 창호는 환기창이 없는 고정형 창임 • 계단실 창은 환기창이 없는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5 개층 마다 환기를 위해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됨
전기 /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도면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2, 3 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됨 • 홈플랫폼('홈닉') 서비스는 홈 IoT(조명/난방 제어 등), 생활 정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통합하여 입주민에게 새로운 User Experience 를 제공함. 홈플랫폼 서비스는 서비스사의 운영 현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및 제외가 있을 수 있음 • 홈플랫폼('홈닉')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홈닉 서비스사의 운영 현황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 및 제외 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 • 전기쿱탑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3.3kW 초과분) • 옥탑, 측벽, 문주 등 일부 공동주택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 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됨
- 주방의 레이아웃 및 주방가구의 사양에 따라 주방 TV 설치위치가 확보되지 않는 타입은 주방 TV가 제공되지 않음 (155, 191 타입)
- 동일 평형의 홀수층, 짝수층 세대 평면이 다른 경우 세대 레이아웃에 맞추어 홈패드, 배선기구 등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37 타입)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 (에어컨, 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등급은 특등급이며,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고 실별 인출구 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에 맞추어 설치됨
- 욕실 오배수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으로 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위층 세대 욕실 급수/급탕 분배기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단, 최하층 세대는 해당욕실 천정내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됨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 상이 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렌지후드 및 화장실 욕실팬의 배기는 외벽 직배기 방식 적용되어 있으며, 렌지후드 가동에 의해 인근 세대로 음식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단, 137 타입의 렌지후드는 옥상배기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음
- 발코니, 다용도실, 창고, 드레스룸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위치를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위치에 따라 가동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함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내 설치 1개소 외 추가 1개 공간에 설치되며 내부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155타입 다용도실 펜트리, 191타입 침실4 창고)
- 기본형 식탁등의 경우 59, 84타입은 매입형, 107타입 이상은 펜던트 타입으로 설치됨
- 층고가 높은 137타입의 거실 기본 조명은 펜던트 타입으로 설치됨
- 84타입 이상 욕실 건식 세면대 공간에는 바닥 배수가 적용 되지 않음
- 욕실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각 욕실의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환기팬, 천장 점검구 및 PD내부 배관 점검용 내시경홀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세대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렌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음
-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음
- 세탁실 및 발코니 천장에 설비배관(욕실배기/주방배기/세대환기)이 노출될 수 있고, 단천장이 시공될 수 있음
- 벽고정형 TV 설치는 거실 1개소면만 가능(침실1과 면한 1개 벽체)하므로 다른 벽체에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스탠드형 TV를 설치해야 함
- 렌지후드 작동 시 현관문 및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외부공기가 항상 공급될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작동시켜야 함
- 개별 세대에 테라스 등으로 제공되는 공간 외의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해당 부위에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 각종 개별 세대용 전기시설은 일체 설치되지 않음

■ 사이버 견본주택: 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7 래미안갤러리 1층

■ 분양문의: 02-401-330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래미안갤러리(래미안 원펜타스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